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-187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1. .

발 의 자 : 권영숙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제1조(목적)에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의 “제22조제5항”을 “제22조제5항에서” 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의 “제22조제5항”을 “제22조제5항에서” 로 수정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①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5항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①----- -----제22조제5항에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